

■ 수자원의 조사·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5]

수문조사기기 검정의 유효기간(제5조제5항 관련)

구 분 종 류	검정 유효기간(년)
1. 수위측정기기	3
2. 유속 및 유량측정기기	2
3. 유사량측정기기	5
4. 강수량측정기기	3
5. 증발량측정기기	5
6. 증발산량측정기기	5
7. 토양수분량측정기기	5
8. 두 종류 이상의 기기가 구조상 하나로 되어 있는 수문조사기기	각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유효기간

비고

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검정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검정을 신청한 후 검정을 하는 중 검정대상 수문조사기기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검정이 완료되는 시점을 검정대상 수문조사기기의 유효기간 만료일로 본다.